

보도자료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보도 배포時 배포 2024.6.25.(화)

담당부서심사감리본부담당자기획팀장 유진아 3149-0354선임조사역 김선우 3149-0297

제 목: 2024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위하여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 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수정공시를 권고하고 수정공시를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 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 **회사 및 감사인은** 해당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중점점검 회계이슈

충당<mark>부채와 우발부채</mark>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 ❖ 계약 및 소송 등에 따른 자원유출가능성 및 금액의 추정
- ▶ 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 ❖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효익의 존재 여부 확인
- ▶ 내부창출 무형자산 등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u>순액</u>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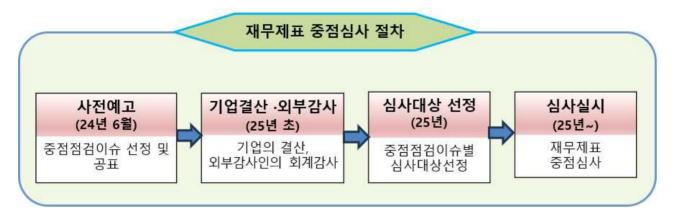
- ❖ 거래의 실질 내용과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를 종합적 고려 하여 본인·대리인 판단
- ▶ 수익인식기준 충족 여부 검토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 자산 및 부채의 유동성 분류 검토
- ▶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성 분류
- 차입약정사항 및 추가 합의내용 등에 유의

I 개요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4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5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이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중점심사이슈 선정절차 및 심사결과

-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 하여 중점심사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를 거쳐 최종 선정
- □ '19년부터 '24.5월까지 **243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하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사(10%)에 대해** 적의 조치함

II

2024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 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 □ (관련기준서)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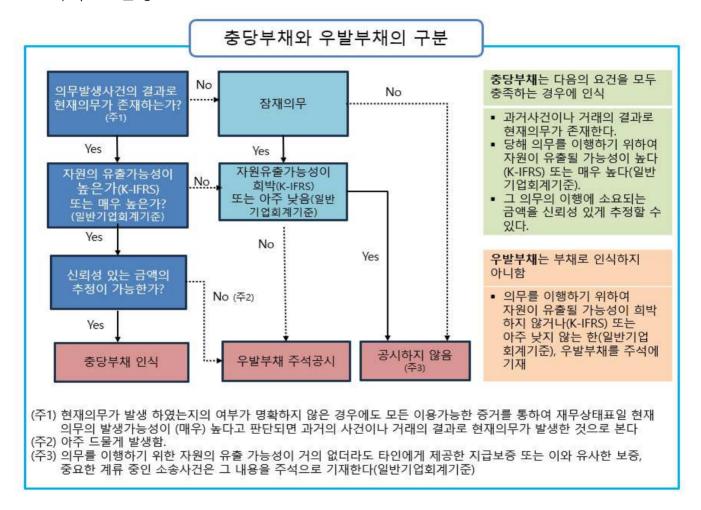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K-IFRS) 또는 매우 높고(일반기업회계기준),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고

-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거나** (K-IFRS) 또는 **아주 낮지 않는 한(일반기업회계기준),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
- □ (선정배경)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하여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회계오류 예시

- ◆ 기계장치 제조업체 A는 제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불량 발생에 따라 품질 보증비용의 지출이 예상됨에도 거래처와의 분쟁악화 가능성, 보상 경험률 자료 부족 등 측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충당부채 미계상
- ◆ B사는 1심에서 패소하고 기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류로 충당부채를 미계상
- ◆ 부동산 건설 시공사인 C는 시행사인 D에 대한 PF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한 우발부채 및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공시 하지 아니함

- ◆ E사는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 □ (선정기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



- □ (회계처리 유의사항)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
 - ① <u>충당부채 인식</u>: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

- *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more likely than not to occur)에 자원의 유출이나 그 밖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보고 있음
- ② <u>우발부채 궁시</u>: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우발부채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기존의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추정 금액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②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K-IFRS "제1038호(무형자산)", "제1036호(자산손상)"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제20장(자산손상)"

K-IFRS 제1038호(무형자산)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등에서는 무형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 하고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 하도록 규정

□ (선정배경)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은 자산의 성격상 인식・평가와 관련하여 주관적인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회계오류 예시

◆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F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 ◆ 의류제조업체 G사는 20X1년에 사업다각화를 위해 화장품제조업체인 B사를 흡수 합병하고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나, 20X4년 관련 화장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화장품 매출이 급감하고 관련 매장을 철수하는 등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음에도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함
- ◆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H사는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거래대금 대신 수취한 골프장회원권(무형자산으로 분류)에 대하여,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골프장회원권 공정가치가 장부가 대비 50% 하락하여 손상차손 인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아니함
- □ (선정기준) 무형자산 변동률, 자산·매출액·동종업종 대비 무형 자산 비중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 □ (회계처리 유의사항)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 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 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하고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을 고려할 필요
-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점검이 요구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금융위)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9.23., 금융위)
- ③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 □ (관련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K-IFRS "제1115호(고객 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에서는 수익은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5단계) ①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 2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③ 3단계: 거래가격을 산정, ④ 4단계: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 5단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과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에서는 다른 기준서(장)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면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선정배경)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대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의 구분 등)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행 또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인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용역에 대한 지급(판매수수료 등)이라면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아야함에도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순액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

회계오류 예시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I사는 J사로부터 부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공급(유상사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다시 J사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관련 계약 내용에 따르면 수령한 원재료는 J사의 동의 없이 전용하거나 제3자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고 원재료 대금은 제품 납품 이후에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대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고 임가공용역만을 제공 하고 있음에도 원재료 입고 시 매입으로, 공급 시에는 원재료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회계처리

-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K사는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면서 백화점·마트 및 위탁대리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매출과 관련 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총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거래관행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동 백화점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과 판매관리비(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
- ◆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L사는 대리점과 위탁가맹계약(매장재고: 회사소유, 매장 운영비: 회사 부담 등)을 체결하고 판매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회사의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고 위탁가맹점주에게는 약정된 수수료 만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M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위탁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장운영비용을 회사의 판매관리비로 인식하지 아니함
- □ (선정기준) 자동차 또는 전자제품 등 부품제조업, 의류 또는 화장품 제조업 및 도매·유통업 등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건설업 제외)
- □ (외계처리 유의사항) 수익을 인식·측정함에 있어 계약 조건과 거래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통제 또는 소유에 따른 유의 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 등)을 판단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법적인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4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관련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과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또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또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

□ (선정배경)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유동성비율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회계오류 예시

- ◆ N사는 20X1년도에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 사채(만기 4년 6개월)를 발행하였으나, 20X1년도 보고기간말 현재 사채 권자의 조기상환청구 가능 시점이 12개월 이내이고 회사는 조기상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유동부채 분류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
- ◆ ○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정상적인 채권회수가 되지 못하여 향후 10년간 회수가능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의 실현시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유동자산으로 분류
- ◆ P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차입금을 상회하는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최근까지 차입금 차환 및 대출 연장이 되지 않은 사례가 없어 유동부채로의 대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분류**

- ◆ Q사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을 초과**하여 비유동부채로 분류 해야 하는 전환사채를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
- □ (선정기준) 유동성 비율 변동 내역,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 (회계처리 유의사항) 자산・부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유동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유동자산의 분류: 현금및현금성자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또는 판매·소비목적 보유 자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 예상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
 - * 사용제한기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 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 으로 분류
- 유동부채의 분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예상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
 - *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

Ⅲ 향후 계획

-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한국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비상장법인 중점 점검분야 선정내역(19년~23년)
 - 2. 연도별 재무제표 주요 지적사례

(붙임1)

비상장법인 중점 점검분야 선정내역(19년~123년)

대상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
2023년	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
	②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③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④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2022년	①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②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③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 성
	④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2021년	①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②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④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2020년	①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개정 기준 적용 2년 유예로 선정 보류)
	②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③ 수익인식(유상사급 및 총액·순액 인식 등) 회계처리 의 적정성
	④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공시의 적정성
2019년	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②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③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붙임2)

연도별 재무제표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2	18	10	12	14	23
1. 매출채권, 매출 과대(소)계상	3	3	1	3	5	3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2	1	_	1	1	3
3. 유형자산 과대계상	1	3	1	2	1	-
4. 개발비 과대계상	1	1	1	3	-	-
5.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	-	-	-	-	1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4	1	-	1	-	4
7. 차입금 등 부채 누락	2	_	_	_	_	-
8. 미지급비용 등 부채 과소계상		_	_	_	_	-
9. 소송관련충당금 등 과소계상		_	_	-	1	-
10.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1	3	-	2	-
11.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	-	-	-	-	-
12.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관련	5	2	1	2	4	11
13.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	4	-	-	-	-
14. 기타손익 과대(소)계상	4	2	3	-	_	1
B. 자산·부채 과대계상 등	3	2	2	8	13	5
1. 자산·부채 과대(소)계상	_	-	-	1	1	-
2. 매출·매입 과대(소)계상	3	2	-	2	9	1
3. 영업활동현금흐름 과대(소)계상	_	-	-	2	1	1
4.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	-	-	2	3	2	3
C. 주석 미기재	9	3	3	4	8	15
1.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3	-	1	3	3	9
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6	2	2	1	5	6
3. 투자유가증권 관련	_	-	-	-	_	
4. 기타 주석 미기재	-	1	-	-	1	
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	-	2	1	2	1	-
E. 회계처리 위반없는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	-	-	-	-	16
1.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위반	-	-	-	-	-	8
2.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위반		_	_	_	_	6
3.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위반		_	_	_	_	2
F. 법규 위반사항	1	1	4	4	3	2
합 계	35	26	20	30	38	61